

연구비 감사 주요 지적사례

고려대학교 연구감사팀



목 차

제 1 장 연구비 관련 제재조치

- 1. 제재처분 정의 3
- 2.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 6

제 2 장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 1. 일상감사 지적사례 7
- 2. 종료감사 비목별 지적사례 8
 - 1) 학생인건비 및 인건비 8
 - 2) 연구시설·장비비 8
 - 3) 연구재료비 9
 - 4) 연구활동비 10
 - 5) 연구수당 17

1

연구비 관련 제재조치

1 정의

1. 참여제한이란?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이하 '혁신법') 제32조 제1항)

2. 제재부가금이란?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혁신법 제32조 제1항)

3. 회수란?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혁신법 제13조 제7항,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각호)

1. 직접비 사용 잔액(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함)
2. 정산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4.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연구개발비 환수란?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음 (혁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행위란?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증명 자료의 위조·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를 의미함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6. 부정행위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곧 제재사유임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p>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 하게 표시하는 행위</p>	<p>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p> <p>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 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개발자료 및 연구개발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p> <p>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p> <p>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 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p>
<p>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p>	<p>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p>
<p>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 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p>	<p>연구개발성과 소유 관련규정 위반</p>
<p>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p>	<p>보안대책 위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보안사항의 국내외 유출</p>
<p>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p>	<p>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수행</p>
<p>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1.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 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p>

연구비 관련 제재조치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4조 부터 제68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
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호	수행과정과 결과 모두 극히 불량		
2호	법령 및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		
<제31조 제1항 각호(부정행위)>			
3호	1	위조·변조·표절·저자를 부당하게 표시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모두 위반	
	3	성과소유 규정위반	
	4	보안대책 위반	
		국내	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
	국외	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	
	5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	조사방해 행위
		㉡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행위
㉢		생명윤리 위반	
㉣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5호	기술료 미납 및 연구개발 성과수익 미납		
6호	회수금 미납		

2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1] 일상감사 지적사례

1. 100만원 이상 시작품 중앙구매 미이행

- 지적사항 : 연구실에서 100만원 이상 시작품을 선구매하였음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중앙구매 기준) ①항 2호 외부제작 시제품·시작품,

제4조의 2(자체구매 기준) ①항 3호 1백만원 미만의 기계기구, 집기비품, 시제품·시작품

2. 2천만원 초과 연구용역 중앙구매 미이행

- 지적사항 : 2천만원 초과 연구용역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와 업체 간 직접 계약을 실시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중앙구매 기준) ①항 5호 연구용역

제4조의 2(자체구매 기준)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은 자체 구매할 수 있다.

6. 2천만원 이하로 제34조 해당하는 연구용역

「고려대학교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입찰) 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건은 입찰에 부쳐야 한다.

2 | 종료감사 비목별 지적사례

1. 학생인건비 및 인건비

- 지적사항 :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책임자 풀링인건비 지급이 필수이
이를 미지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 ⑩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 육아휴직 중인 연구지원인력의 퇴직충당금을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연구시설·장비비

- 지적사항 : 100만원 이상 연구기자재를 중앙구매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선구매 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중앙구매 기준) ①항 1호 기계기구, 집기비품

제4조의2(자체구매 기준) ①항 3호 1백만원 미만의 기계기구, 집기비품, 시제품·시작품

- 지적사항 : 100만원 이하의 연구물품의 경우 자체구매 및 물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해당 절차가 누락됨 (물품등록 절차란 구매시스템을 통해 자체구매 물품에 대한 검수 및 자산등록을 거치는 절차임)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의2(자체구매 기준)

- ② 제1항의 사유로 연구용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구매한 연구자는 물품등록 절차를 거친 후, 연구비에서 해당 구입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연구재료비

- 지적사항 : 단일구매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 구매 시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중앙구매 기준) ①항 3호 연구재료

제4조의2(자체구매 기준) ①항 4호 3백만원 미만의 연구재료(시제품·시작품 제외)

4. 연구활동비

(1) 외부기술전문활용비

- 지적사항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회의비

- 지적사항 :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회의비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33조

3. 회의비는 심야시간(23시부터~익일 06시까지) 및 공휴일에는 집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름.

- 지적사항 : 본교에서 운영하는 고대빵에서 사용한 회의비(다과비)와 하나스퀘어, SK미래관 등 교내 회의실 대관료는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내부거래)으로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비로 집행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 내부거래: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3) 국내·외 출장비

- 지적사항 : 동일 항공권 결제 건에 대해 항공료를 중복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여비의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동일한 업무상 여행에 대해 중복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중복지급 시 환수 조치한다.

- 지적사항 : 학생연구원 출장 교통비를 교내 여비 규정상 허용 범위(버스 우등석 요금)를 초과하여 프리미엄 요금으로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본교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1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명시된 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 지적사항 : 본교 소속 연구참여자 고려대학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국외 여비는 별표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지역 등급을 오적용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본교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1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명시된 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 지적사항 : 연구참여자가 공무원 신분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해야 하나 본교 여비규정을 오적용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지적사항 : 학회 등 출장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식비를 중복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⑦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 이동 중 기내에서 숙박하는 항공여행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7조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지급)

③ 국외 여비는 별표2의 기준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이동 중 기내 및 선박에서 숙박 하는 항공여행과 선박여행에는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 지적사항 : 출장 중 회의식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출장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중복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여비의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동일한 업무상 여행에 대해 중복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중복지급 시 환수 조치한다.

- 지적사항 : 여비 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가서비스의 집행은 불인정되나 항공여행 시 유료 사전좌석지정서비스를 포함한 항공료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규정에 지급 근거가 없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질의응답(Q&A)과 외부 회계법인의 연구비 정산 시 항공료 사전좌석지정서비스 요금을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음

- 지적사항 : 개인 일정에 대한 여행자보험료 및 교통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의 업무상 여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소프트웨어활용비

- 지적사항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을 최소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나 1년 사용계약기간으로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 지적사항 : 소프트웨어 구입 시 원칙적으로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되어야 하나 도입기한을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 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지적사항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을 최소 단위로 체결하지 않고, 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를 연구비에서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본다.

(6) 연구실운영비

- 지적사항 : 사무용품 집행금액 중 개인용품이 집행됨(손목 받침대, 달력 구매 등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지원비

- 지적사항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회 연회비, 야근·특근 식대 등을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 지적사항 : 정회원 연회비 기준금액을 초과한 연회비(임원회원 회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함

◆ 관련 근거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Q&A)에서 임원회원 회비는 연구비 집행 불인정 항목으로 명시됨

- 지적사항 : 연회비의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나, 연구개발기간 외에 연회비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연회비(1년)의 집행은 가능하나, 혁신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2년치 연회비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19쪽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8) 그 밖의 비용

- 지적사항 :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용 명함 제작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11.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공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지적사항 : 거래내역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취소분 카드의 차액(취소 수수료)을 환입하지 않음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19쪽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다른 사용용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 ④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 지적사항 : 워크숍 참가자 기념품(텀블러)을 연구비로 구입함

◆ 관련 근거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Q&A)에서 기념품은

- ①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 ② 설문조사 답례품에 한하여 연구비 집행 가능함

5. 연구수당

- 지적사항 : 연구수당 지급액은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적사항 : 단계종료 과제에서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 대비 2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 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 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20/100)$$

- 지적사항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 동안 참여연구원 1인에게 70%이상 초과 집행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사용용도)

-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